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6. 20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6. 6. 22
- 다. 상정일자 : 96. 7. 1(제45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 수 철
- 나. 제안이유
 -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군재정력 확충을 위해 소액지방세를 세무 공무원이 현금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등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개정
- 다. 주요내용
 - 소액 지방세에 대한 세무공무원 현금 징수가능
 -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300,000원이하인 군세
 -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세분화
 - ┌ 현행 : 개인 1,000원
 - └ 개정 :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000원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
 - 자동차세 과세표준 세율 신설
 - 지방세법 제196조의 5에 규정된 자동차세 과세표준 과세율 조례에 명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재휴)

- .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세조례개정 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 .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6. 6. .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의 이유 : 전라남도 준칙안에 의거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함

2. 개정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76조, 동법 제196조의 5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전라남도 세정 13400 - 230 ('96. 3. 16) 호

3. 주요골자

○ 소액 지방세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 (가산금 제외) 이 30만원 이하의 군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제2호 규정에 의한 소액 지방세로 규정하여 세무 공무원의 현금 수납이 가능토록 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군 재정력 확충에 기여

○ 개인균등할 주민세중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토록 신설

○ 자동차세와 관련한 납세 의무자의 신고의무 조항 삭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관련 조항을 신설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는"을 "관하여"로 한다.

제6조 중 "내부위임 규정"을 "위임규칙"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규칙 제7조의 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000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7조 제1항중 "특별징수의"를 "특별징수"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4항중 "받았을"을 "받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면탈된"을 "포탈된"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과세표준이"를 "과세표준의"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개인 1,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

제19조 제1항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66조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중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CC당 세액	배 기 량	CC당 세액
1,000 CC 이하	18 원	800 CC 이하	100 원
1,500 CC 이하	18 원	1,000 CC 이하	120 원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CC당세액	배 기 량	CC당세액
2,000 CC 이하	19 원	1,500 CC 이하	160 원
2,500 CC 이하	19 원	2,000 CC 이하	220 원
2,500 CC 초과	24 원	2,500 CC 이하	250 원
		3,000 CC 이하	310 원
		3,000 CC 초과	370 원

2. 기타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영업용
고속 버스	100,000원	0
대형전세버스	70,000원	0
소형전세버스	50,000원	0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 kg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적재정량 10,000kg 초과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3톤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원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본문중 '위하여' 를 '의하여' 로 한다.

제49조 제1항중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로 하고 제2항중 '사업용' 을 '구관사업용' 으로 한다.

제51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 제1항중 "법 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법 제 290조 제1항"을 "법 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및 법 제 290조"로 한다.

제63조 중 제목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본문중 "법 제 245조의 2 의"를 "법 제 245조의 2"로 하며 제5호중 "비과세 및 감면사유"를 "비과세 사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과세의 근거) <u>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제1조(과세의 근거) ----- ----- <u>관하여</u> ----- ----- -----.</p>
<p>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u>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 면장에게 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u></p>	<p>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 ----- ----- ----- ----- ----- <u>위임규칙</u> -----</p>
<p>< 신 설 ></p>	<p>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규칙 <u>제7조의 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가산금을 제외한 다)이 300,000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u></p>
<p>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u>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 의무자가 법 제26조의 2 및 지방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u></p>	<p>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 ----- <u>특별징수</u> ----- ----- ----- -----</p>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u>시행규칙</u> ----- ----- ----- -----</p>
<p>② ~ ③ (생략)</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하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 ----- <u>받은</u> ----- ----- -----</p>
<p>제11조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u>면탈된</u>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p>	<p>제11조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 ----- <u>포탈된</u> ----- ----- -----</p>
<p>제14조 (군세 심의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u>과세표준</u>이 결정 기타 군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4조 (군세 심의위원회) ①----- ----- <u>과세표준</u>의 ----- ----- -----</p>
<p>② ~ ⑥ (생략)</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5조 (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15조 (세율) ----- -----</p>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1. <u>개인 1,000원</u></p> <p>2. (생략)</p> <p>② (생략)</p> <p>제19조 (구관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p> <p>① <u>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u>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21조 (과세표준)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u>과세시가표준액</u>으로 한다.</p> <p>제28조 (신고의무) <u>법 제196조의 9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 또는 이전등록을 필한후 7일 이내에 다음</u></p>	<p>1. <u>개인</u></p> <p>가. <u>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000원</u></p> <p>나. <u>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u></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 (구관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p> <p>① <u>법 제266조 제3항</u>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 (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u>시가표준액</u> ----- -----</p> <p>< 삭제 ></p>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각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p> <p>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년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p> <p>3. 정차장</p> <p>4.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배기량</p> <p>5. 취득가격</p> <p>6. 신고사항 발생년월일과 그 사유</p> <p>7. 기타 참고사항</p>	<p>제28조(과세표준과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p> <p>1. 승용자동차</p> <p style="padding-left: 20px;">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p>< 신 설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영 업 용</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 영 업 용</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배 기 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CC당세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배 기 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CC당세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 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 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0 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 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 원</td> </tr> </tbody> </table>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CC당세액	배 기 량	CC당세액	1,000 CC 이하	18 원	800 CC 이하	100 원	1,500 CC 이하	18 원	1,000 CC 이하	120 원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CC당세액	배 기 량	CC당세액														
1,000 CC 이하	18 원	800 CC 이하	100 원														
1,500 CC 이하	18 원	1,000 CC 이하	120 원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2,000cc 이하	19원	1,500cc 이하	160원
		2,500cc 이하	19원	2,000cc 이하	220원
		2,500cc 초과	24원	2,500cc 이하	250원
				3,000cc 이하	310원
				3,000cc 초과	370원
		<p>2. 기타 승용자동차</p> <p style="text-align: center;">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원		
		<p>3. 승합자동차</p> <p style="text-align: center;">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구 분	영 업 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0	
		대형전세버스	70,000원	0	
		소형전세버스	50,000원	0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4. 화물자동차</p> <p>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적재정량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영업용</th> <th style="width: 50%;">비영업용</th> </tr> </thead> <tbody> <tr> <td>1,000kg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6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8,500원</td> </tr> <tr> <td>2,000kg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9,6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4,500원</td> </tr> <tr> <td>3,000kg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3,5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8,000원</td> </tr> <tr> <td>4,000kg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3,000원</td> </tr> <tr> <td>5,000kg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2,5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9,500원</td> </tr> <tr> <td>8,000kg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500원</td> </tr> <tr> <td>10,000kg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5,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7,5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p>5. 특수자동차</p> <p>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영업용</th> <th style="width: 50%;">비영업용</th> </tr> </thead> <tbody> <tr> <td>대형특수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7,500원</td> </tr> <tr> <td>소형특수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13,5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8,5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p>6. 3톤이하 소형자동차</p>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 9조의 2 규정에 <u>위하여</u>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9조 (구관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p>	<p style="text-align: center;">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10px auto;">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영 업 용</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비 영 업 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3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8, 000원</td> </tr> </table> <p>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1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 ----- <u>위하여</u> ----- ----- ----- ----- ----- ----- -----</p> <p>제49조 (구관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 ----- -----</p>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 300원	18, 000원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 300원	18, 000원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 4 (생략)</p> <p>②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구간사업용 -----</p>
<p>제51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군내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p>	<p>제51조 (납세의무자) -----</p> <p>----- 건설교통부장관 -----</p>
<p>제54조 (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자가 도시계획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감면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4조 (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및 법 제 290조 -----</p> <p>-----</p> <p>② (현행과 같음)</p>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3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 사항)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비과세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u>비과세 및 감면사유</u></p> <p>6. (생략)</p>	<p>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 사항) 법 제245조의 2 -----</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비과세 사유</u></p> <p>6. (현행과 같음)</p>